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2 선고 2021가단1180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포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준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을 담당변호사 손병기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5.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2,755,8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75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 4. 30. 원고로부터 2011 및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63,449,320원 = 2011년 귀속분 42,487,560원 + 2012년 귀속분 20,961,760원)를 부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2. 1. 18. 현재 B의 체납액은 102,755,820원(본세 63,449,320원 + 가산금 39,306,500원)이다.

나. 망 C은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B 및 D, E을 둔 채 2018. 5. 2. 사망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7. 10. 접수 제45208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가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질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9 상속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액과 포천시 및 세무서의 체납액 등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국세청은 2011. 2. 고의적인 체납 탈세에 대응하고자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족과 그 친인척의 재산의 변동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2018. 7. 10.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1. 5. 11. 제기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나(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그리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8. 3.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5. 11.로부터 1년 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존재가 있었음을 알았고, 나아가 B가 사해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는, B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는바, 상속포기한 B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러한 B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등기의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뒤집고 B, D, E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7. 9.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아닌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2/9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6,800,000원으로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7. 7. 접수 제631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9,600만 원으로 된 서울북부지방법 등기국 2013. 5. 8. 접수 제423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중 위 ② 등기는 2019. 5. 1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 지분(2/9)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

1)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8.까지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02,755,820원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2. 26.경 시가는 615,00,000원(원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가 66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 상태나 입지에 관한 개별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위 말소된 근저당권(위 가. 2)의 ②번)의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는 80,000,000원이고, 존속하는 근저당권(위 가. 2)의 ①번)의 채권최고액은 46,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또는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88,200,000원[= 615,000,000원 - (80,000,000원 + 46,800,000원)]이고, 그 중 B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담보가액은 108,488,888원(= 488,200,000원× 2/9,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755,820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B의 담보가액 108,488,888원보다 적으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담보가액 102,755,820원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102,755,8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위 102,755,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H,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L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 위 경량철골경사지붕 19층 아파트

1층 216.3905㎡

2층 698.6630㎡

3내지 18층 각 782.9354㎡

19층 323,5978㎡

지1층 2205.31㎡

지2층 2120.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M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9,0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H 대 5474.9㎡

2. 서울특별시 노원구 I 대 3449.9㎡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8924.8분의 21.9896. 끝.

